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의 임의적 감액 금지〉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94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31.
3. 회부연월일 : 2026.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가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의 계약이 종속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와 무관한 과업범위를 포함시키거나, 소유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타 입법례와 유사하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적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질서와 안전관리 기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후
단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후단 신설 등).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⑥ (생략) 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u><후단 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신 설> ⑧·⑨(생 략)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대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서에서 정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⑧·⑨ (현행과 같음)
------------------------------------	--

현행법¹⁾은 전기사업자 및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록 하되, 예외적으로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 등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²⁾

[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업체 현황

구 분	대행업체(1,426업체)	개인대행자(61업체)	전기안전공사	합 계
인원(명)	16,854	61	508	17,423
사업장(개소)	482,086 (98.8%)	1,067 (0.2%)	4,758 (1.0%)	487,911

* (대행업체 등록요건) 자본금 5천만원이상, 기술인력 8명, 장비 12종,

** (개인대행자 자격요건) 전기사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장비 8종 →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를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계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³⁾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⁴⁾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소규모 자가용설비 소유자 등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접 고용(선임) 원칙의 예외로서 대행업체, 개인대행자,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고 있음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 대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표] 실비정액가산방식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직접인건비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투입된 인원수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직접경비	○ 업무수행 경비(여비, 특수자료비, 인쇄비, 측량비, 조사비 등)
제경비	○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불포함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 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
기술료	○ 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로 계산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매년 분야별 엔지니어링 종사자의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평균 노임단가를 공표⁵⁾하고 있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전기분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⁶⁾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 대가⁷⁾를 정하여 회원사에 매년 안내 중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사업자 등은 협회에서 제시하는 대가 및 수수료 등을 참고하여 가격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는 이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자를 선택하고 있음.

그런데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 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전기안전관리와 무관한 과업을 포함시키거나, 소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

5) 2023년 말에 공표한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결과는 **[참고자료 1]** 참조

6)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별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부문 등)

7) 2024년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한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및 협회가 정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대가는 **[참고자료 2]** 참조

으로 인해 임의로 대가를 감액하는 등 불공정 계약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를 계약으로 정할 때, 재난의 발생으로 해당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계약과정에서 영세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자가 부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노동부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는 소유자 등이 대행사업자간의 계약조건, 경쟁 등을 반영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감액금지 규정은 정부에 의한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여 안전관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3

참고1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 및 대가기준

☞ **(법적근거)**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설비 소유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부여(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 전기설비 운용·감독, 안전점검, 안전교육, 응급조치, 공사감리 등 → '직무고시' 규정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방법 >

구 분	사업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선임유무	○	○	×
선임방법	직접고용	① 직접, ② 위탁, ③ 대행	×
선임용량	전체	(수전) 75kW↑, (발전) 20kW↑	×

* 사업용전기설비는 직접 고용원칙이나, 태양광(3,000kW 미만), 기타 신재생(300kW 미만)은 대행 가능하며, 10kW초과 20kW 미만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별 현황('25.11월 기준)

① **(직접 고용)** 모든 사업용과 설비용량 75kW 이상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고용(선임)이 원칙

○ 28,089개 사업장에 33,070명의 전기안전관리자(보조원 포함) 직접 고용

② **(상주위탁, 1,000kW이상)** 자가용설비 소유자 등의 직접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전문업체 or 시설물관리업체에게 위탁 허용('02.1)

구 분	전기전문업체(61업체)	시설물관리업체(786업체)	합 계
인 원(명)	3,460	29,127	32,587
사업장(개소)	1,926 (9.1%)	19,220 (90.9%)	21,146

* (전문업체 등록요건) 자본금 2억원 이상, 기술인력 20명, 장비 15종, ** (시설물관리업체 등록요건) 자본금 2억원 이상, 기술인력 10명, 장비 15종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

③ **(대행관리, 75kW이상 1,000kW미만)** 소규모 자가용설비 소유자 등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행업체, 개인대행자, 전기안전공사에 대행 허용

구 분	대행업체(1,426업체)	개인대행자(61업체)	전기안전공사	합 계
인 원(명)	16,854	61	508	17,423
사업장(개소)	482,086 (98.8%)	1,067 (0.2%)	4,758 (1.0%)	487,911

* (대행업체 등록요건) 자본금 5천만원이상, 기술인력 8명, 장비 12종, ** (개인대행자 자격요건) 전기사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장비 8종 → 시·도지사에게 등록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해당년도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의 평균 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을 조사하여 매년 말에 공표, 차기년도 적용
 < 엔지니어링 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1일 1인기준(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본 협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74,467	461,459	455,331	467,217	456,237	584,019	447,658
특급기술자	401,407	360,108	343,079	373,353	362,012	463,039	357,676
고급기술자	335,379	311,965	315,288	310,884	323,993	395,526	301,863
중급기술자	300,463	300,452	283,343	295,138	272,129	363,751	261,545
초급기술자	263,602	248,432	249,574	235,459	246,584	297,437	229,278
고급숙련기술자	309,271	301,459	273,034	281,075	267,856	360,090	289,195
중급숙련기술자	241,305	246,556	234,317	250,087	222,995	350,319	226,344
초급숙련기술자	217,582	209,640	198,751	218,142	192,381	226,251	194,317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열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업, 산업, 해양·수산 해당(모고서 참조)

○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

○ 적용일 : 2026년 1월 1일 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 (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참고3

2025년 전기안전관리대행 대가 비교(안전공사vs기술인협회)

(단위:원 /VAT 포함)

구분		전기안전공사 수수료	기술인협회 안내 대행 대가
저 압	50kW 이하	104,390	156,724
	~ 100kW 이하	119,350	175,696
	~ 200kW 이하	136,070	197,968
	~ 300kW 이하	155,650	211,990
	~ 400kW 이하	237,710	367,890
	400kW 초과	285,120	386,862
고 압 및 특 고 압	100kW 이하	147,510	260,658
	~ 200kW 이하	182,710	288,703
	~ 300kW 이하	202,730	306,025
	~ 400kW 이하	296,780	489,146
	~ 500kW 이하	351,120	508,942
	~ 600kW 이하	464,090	706,910
	~ 700kW 이하	597,190	725,057
	~ 800kW 이하	721,930	932,923
	~ 900kW 이하	895,620	954,370
	~ 1,000kW 이하	1,039,720	1,403,922
	~ 1,250kW 이하	1,360,040	1,467,437
	~ 1,500kW 이하	1,636,360	1,636,360
	~ 2,000kW 이하	2,235,640	2,235,640
	~ 2,500kW 이하	2,976,490	2,976,490
	~ 3,500kW 이하	3,406,590	3,406,590
	~ 4,500kW 이하	4,087,930	4,087,930

* 전기기술인협회 대행 대가는 중급기술자의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작성